

<b>의안 번호</b>	<b>2513</b>	<b>【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(안)】</b> <b>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11. 11.(화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2. 10.(수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2. 12.(금)

### 2. 제안이유

-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 등의 적정여부를 심의받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: 245,916천원 (2025년도 말 조성액 + 2026년도 조성액)  
(단위 : 천원)

2025년도 말 조성액 ㉠	2026년도 조성계획			2026년도 말 조성액 ㉡ = ㉢ + ㉠
	수입 ㉢	지출 ㉣	증감 ㉤ = ㉢ - ㉣	
367,411	151,500	272,995	△121,495	245,916

- 나. 2026년 수입계획: 518,911천원(공공예금이자수입+기부금수입+2025년도 예치금회수)  
(단위 : 천원)

편성목	수입액	산출내역
합계	518,911	
(216-01) 공공예금이자수입	1,500	공공예금 이자수입 1,500,000원 × 1식 = 1,500,000원
(224-03) 기부금수입	150,000	기부금 12,500,000원 × 12월 = 150,000,000원
(714-01) 예치금회수	367,411	예치금 이월 367,411,000원 × 1식 = 367,411,000원

다. 2026년 지출계획: 518,911천원 (일반운영비+기금사업+예치)

(단위 : 천원)

편성목	지출액	산출내역
합계	518,911	
(602-01) 일반예치금	245,916	○ 예치금 245,916,000원 × 1식=245,916,000원
(201-01) 사무관리비 고향사랑기금운영	39,750	○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3,000,000원 ○ 답례품 구입비 35,000원 × 1,500건 × 70%=36,750,000원
(201-01)사무관리비, (206-01)재료비, (307-02)민간경상사업보조 고향사랑기금사업추진(환경위생과)	80,000	(201-01) ○ 황방산생태계보전 활동운영비 1,000,000원 ○ 황방산 생태교란생물 제거사업 4,000,000원 (206-01) ○ 고향사랑 나무심기 재료비 5,000,000원 (307-02) ○ 황방산생물다양성기록화 사업 70,000,000원
(201-01)사무관리비 고향사랑 기금사업추진(문화관광과)	20,000	한글의 고장 외솔 최현배 선생 나라 사랑 보급사업 20,000,000원
(405-01)자산및물품취득비 고향사랑 기금사업추진(보건과)	70,000	생명지킴이 보건소 구급차 교체 사업 70,000,000원
(401-01)시설비 고향사랑 기금사업추진(공원녹지과)	20,000	입화산 자연휴양림 꽃길 조성사업 20,000,000원
(307-01)의료 및 회복비 고향사랑 기금사업추진(건강관리과)	25,245	차상위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25,245,000원
(401-01)시설비 고향사랑 기금사업추진(노인장애인과)	18,000	겨울철 한파 대비 경로식당 온열의자 설치 사업 18,000,000원

라.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

(단위 : 천원)

예탁처	예치 및 예탁액			
	2024년도 말 현재액	2025년도 말 현재액 <sup>㉠</sup>	2026년도 말 현재액 <sup>㉡</sup>	증감 <sup>㉢</sup> - <sup>㉠</sup>
NH농협은행	215,911	367,411	245,916	△121,495

## 4. 근거법규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나. 「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21조  
(기금운용계획의 수립)

## 5. 검토의견

-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조성 목표액 설정 및 자금운용계획 등의 적정여부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,
- 세부내용을 검토한 바, 고유목적사업비 편성비율 측면에서는 52.6%로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, 일반행정사업과 구분하여 취약계층 보호, 주민의 문화예술보존 증진,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, 주민 복리증진 사업 등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적극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

**참고자료**      **관련 법령**

□ **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**

**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**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**

**제5조(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10.>

1.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·관·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
2.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·부문·정책사업·단위사업·세부사업·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신설 2015. 12. 10.>

1.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
2.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

**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**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

의위원회(이하 “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10.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, 장소, 참석자,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12. 10.>

## □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1.3.14><개정 2011.12.26><개정 2014.12.29>

**제2조(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)** ①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 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개정 2011.3.14><개정 2011.12.26><개정 2014.12.29><개정 2022.10.4.>

1. 일반회계 전출금
2. 국, 공유재산 매각대금
3. 지방채 발행
4. 울산광역시 보조금
5.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
6. 그 밖의 수익금<개정 2014.12.29>

②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개정 2022.10.4.>

**제3조(기금의 용도)**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.

1. 신청사 부지 매입비
2. 신청사 건축비
3. 그 밖의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건립과 관련한 제 경비<개정 2014.12.29>
4. 청사 증축비 및 관련된 제 경비<신설 2011.12.26.>

**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**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<개정 2014.12.29>

② 기금은 구 금고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.

**제5조(기금의 이익 및 결손 처리)**<개정 2022.10.4.>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.<개정 2022.10.4.>

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.

**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** ① 신청사 등 건립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개정 2014.12.29><개정 2022.10.4.>

② 위원회 운영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.<개정

2016.12.30><개정 2022.10.4.>

**제7조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 2022.10.4.>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<개정 2016.12.30><개정 2022.10.4.>
2.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<개정 2016.12.30>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<개정 2016.12.30>
4. <개정 2014.12.29><삭제 2016.12.30>

**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** ① 구청장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.<개정 2014.12.29><개정 2022.10.4.>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“의회“라 한다 한다)에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14.12.29><개정 2022.10.4.>

**제9조(기금운용의 성과분석)**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해야 하고,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22.10.4.>

**제10조(기금관리공무원)**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 한다.

1. 기금운용관: 청사관리 담당국장<개정 2022.10.4.>
2. 기금출납원: 청사관리업무 담당주사<개정 2022.10.4.>

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.<개정 2014.12.29><개정 2022.10.4.>

**제11조(관계 규정의 준용)**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회계관계 규정을 준용한다.<개정 2014.12.29.><개정 2022.10.4.>